

[별표 1] 관리적 보호조치

| 구 분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세 부 조 치 사 항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| 1.1. 정보보호 정책 | 1.1.1. 정보보호 정책 수립      | 정보보호 정책을 문서화하고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 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.1.2. 정보보호 정책 검토 및 변경 | 정보보호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, 관련 법규 변경 및 내·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.1.3. 정보보호 정책문서 관리    |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,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| 1.2. 정보보호 조직 | 1.2.1. 조직 구성           | 정보보호 활동을 계획, 실행, 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.2.2. 역할 및 책임 부여      | 정보자산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.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도 서비스 수준 협약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.   |
| 2. 인적보안         | 2.1. 내부인력 보안 | 2.1.1. 고용계약            | 고용 계약서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포함시키고,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, 자원,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이전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.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.1.2.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,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, 직무 지정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.1.3. 직무 분리           | 권한 오남용 등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.1.4. 비밀유지 서약서        |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밀유지서약서에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  |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| 2.1.5.<br>상별규정                | 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고, 위반 사항이 발생 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또한 정보보호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.    |
|                    | 2.1.6.<br>퇴직 및 직무변경           | 임직원의 퇴직 또는 직무 변경에 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이에 대한 접근권한도 제거하여야 한다.   |
| 2.2.<br>외부인력<br>보안 | 2.2.1.<br>외부인력<br>계약          | 외부인력(외부유지보수직원, 외부용역자 포함)에 의한 정보자산 접근 등과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| 2.2.2.<br>외부인력<br>보안 이행<br>관리 |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| 2.2.3.<br>계약 만료<br>시 보안       | 외부인력과의 계약 만료 시 자산 반납, 접근권한의 회수, 중요정보 파기,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대한 비밀 유지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 |
| 2.3.<br>정보보호<br>교육 | 2.3.1.<br>교육 프로그램 수립          |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포함하여 연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| 2.3.2.<br>교육 시행               |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, 내·외부 보안사고 발생,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| 2.3.3.<br>평가 및 개선             | 정보보호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.  |
| 3. 자산관리            | 3.1.<br>자산 식별<br>및 분류      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자산(정보시스템, 정보보호시스템, 정보 등)에 대한 자산분류기준 수립하고 식별된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별된 자산마다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 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   | 3.1.3.<br>보안등급<br>및 취급       |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,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, 보안 등급별 취급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  |  |
| 3.2.<br>자산 변경<br>관리 | 3.2.1.<br>변경관리            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(시설, 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.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3.2.2.<br>변경 탐지<br>및<br>모니터링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(시설, 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3.2.3.<br>변경 후<br>작업검증    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(시설, 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변경 후에는 보안성 및 호환성 등에 대한 작업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.   |  |
| 3.3.<br>위험관리        | 3.3.1.<br>위험관리<br>계획<br>수립   |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, 법적 분야 등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 방법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.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3.3.2.<br>취약점 점<br>검         | 취약점 점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(예 : 유·무선 네트워크, 운영체제 및 인프라,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등)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3.3.3.위<br>험분석 및<br>평가       |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3.3.4.<br>위험처리               | 법규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과 위험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 |  |
| 4. 서비스<br>공급망<br>관리 | 4.1.<br>공급망관<br>리 정책         | 4.1.1.<br>공급망 관<br>리 정책 수<br>립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|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| 4.1.2.<br>공급망 계약        | 클라우드컴퓨ting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하며,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. |   |
| 4.2. 공급망 변경관리 | 4.2.1.<br>공급망 변경관리      | 정보보호 정책,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 |   |
|               | 4.2.2.<br>공급망 모니터링 및 검토 | 클라우드컴퓨ting서비스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기록 및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여야 한다.  |   |
| 5. 침해사고 관리    | 5.1.<br>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| 5.1.1.<br>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 |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절차, 유출 금지 대상,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침해사고 대응 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5.1.2.<br>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 |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·분석·대응할 수 있는 보안 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,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5.1.3.<br>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점검  |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,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| 5.2.<br>침해사고 대응         | 5.2.1.<br>침해사고 보고  |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클라우드컴퓨ting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, 원인,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5.2.2.<br>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  |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| 5.3.<br>사후관리              | 5.3.1.<br>침해사고<br>분석 및 공<br>유 |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3.2.<br>재발방지                |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침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변경하여야 한다.  |
| 6. 서비스<br>연속성관<br>리 | 6.1.<br>장애대응              | 6.1.1.<br>장애 대응<br>절차<br>수립   |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,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1.2.<br>장애 보고            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, 원인,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1.3.<br>장애<br>처리 및 복<br>구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서비스 수준 협약(SLA)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1.4.<br>재발방지                |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장애 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| 6.2.<br>서비스 가<br>용성<br>관리 | 6.2.1.<br>성능 및 용<br>량<br>관리  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,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2.2.<br>이중화 및<br>백업         | 정보처리설비(예 :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, 스토리지, 네트워크 장비, 통신 케이블, 접속 회선 등)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,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2.3.<br>서비스                 |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 |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가용성 점검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7. 준거성 | 7.1.<br>법 및 정책<br>준수 | 7.1.1.<br>법적요구<br>사항<br>준수  |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7.1.2.<br>정보보호<br>정책<br>준수  |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. |
|        | 7.2.<br>보안 감사        | 7.2.1.<br>독립적 보<br>안감사      |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7.2.2.<br>감사기록<br>및<br>모니터링 | 보안감사 증적(로그)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비인가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      |